

Ⅶ.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1. 도입방안

가. 보험업법상 『보험지주회사』 장 신설방안

일본의 경우 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7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금융권역별 사업법에서 지주회사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근거로 보험지주회사는 보험업법 제10장의2 제3절‘보험지주회사에 관한 특례’에서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개별 사업법에서 지주회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보험지주회사는 뉴욕주의 경우 보험법 15절(Insurance Law Article 15. Holding Companies)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혀 성격이 다른 은행지주회사와 보험지주회사를 그 특성을 무시하고 하나의 법체계로 규율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적합성에도 부합되지 않는 법체계라 생각된다. 따라서 보험지주회사제도를 금융지주회사법에서 분리(배제)하여 사업법인 보험업법에서 별도의 장을 설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금융지주회사법과는 별도로 보험업법내 보험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되, 산업특성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 금융전업회사 뿐만 아니라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이라는 자본의 이질적 특성을 반영하여 보험업법을 통해 보험지주회사가 도입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요구된다.

법안의 내용은 보험지주회사의 설립, 인가 및 보고, 보험지주회사의 소유 및 업무제한, 대주주 자격요건, 자회사의 업무범위 등의 관련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감독 및 기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

사법상의 관련조항을 준용하거나 보험업법상 타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보험업법상 보험지주회사제도의 주요 신설 내용은 첫째, 정의·인가·적합성 심사 등, 둘째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업종 및 업무 허용범위, 셋째 감독, 보고, 검사, 계열사간 거래, 투자제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관련 내용은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보험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그 기본 방향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검토는 다음의 금융지주회사법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로 미국 뉴욕주 보험법과 일본의 보험업법상의 지주회사 관련 규정의 체계를 보면 <표 VII-1>과 같다.

<표Ⅶ-1> 미국과 일본의 보험지주회사 법체계 비교

	뉴욕주 보험법	일본 보험업법
정의	§1501~1502(정의, 제외)	제2조 16항(정의),
등록 및 인가	§1503(등록)	제271조의18(인가)
계열사간 거래	§1505(계열사간 거래)	-
감독 및 검사	§1504(보고, 감사, 공시)	제271조의27(자료제출) 제271조의28(현장검사)
인가취소	§1510(위반, 처벌, 관할권)	제271조의30(인가취소등)
주요주주	-	제271조의20(주요주주)
보고 및 열람	§1504(보고, 감사, 공시)	제271조의24(업무보고서), 제271조의25(서류열람)
인수 및 분할	§1603(인수의사의 통지)	제271조의31(매수, 분할)
업무범위	규정 없음	271조의21(업무범위)
계열사 거래	§1505(계열사간 거래)	-
적합성 심사	§1506(보험사 지배권의 인수, 보유)	271조의19(심사)
위반 및 처벌	§1510(위반, 처벌, 관할권)	제271조의30(인가취소등), 317조제7호 및 제8호
자회사 범위	§1601(투자권, 업무), 1610(지분소유한도)	제271조의22(자회사 범위)
자회사 금지	§1707(피라미딩 제한)	제271조의22 제3항 1호 및 2호(자회사 범위)
총투자제한	§1611(총투자제한)	특별한 규정 없음.

주: 1) 미국 뉴욕주 보험법(Article 15. Holding Companies; NYIL § 1501~ § 1716)

2) 일본 보험업법 제 10장의2 제3절 보험지주회사 관련 특례(제271조의 18~제271조의 33) 등

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한 방법

1) 법체계 및 전체적 개정방향

첫째,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체제를 유지하되 일부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개별 금융업권별(은행/보험/증권)로 금융지주회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즉 은행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증권지주회사별로 지주회사제도의 근거를 금융지주회사법 상에서 규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보험지주회사 등의 정의를 추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보험지주회사라 함은 보험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하 ‘보험회사’)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라고 규정하여 법상 지주회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건전경영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취지에 충실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의 행위규제, 금산분리 규제 등에 대해 금융업종간 차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의 금융 관련법은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업종간 규제의 차이를 인정하여 은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지만 여타 금융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약하게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보험업법 및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상의 동일대상, 동일목적에 대한 규제의 차이는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보험업법을 중심으로 규제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서 경쟁력을 배양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 목적 하에 외자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공정거래법상의 목적과도 크게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국내 기업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넷째, 금융지주회사법상 보험지주회사 정의방식(최대출자자+자산 50%

기준)을 ‘지배력 기준’ 만을 사용하되 ‘지배’ 또는 ‘지배주주’의 정의를 명확하게 일정 지분을 이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기관의 지배주주가 될 것이므로 지배주주의 적격성만 심사하도록 금융지주회사를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회사’로만 정의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때 ‘지배’나 ‘지배주주’의 개념을 일정지분을 기준 등으로 명백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국내 다른 금융업법(은행법, 보험업법)과의 균형 및 일관성을 고려한다면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기준은 10%~20% 수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을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미국 NAIC 모델법의 경우 보유 지분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보험감독관이 재량적으로 지배 여부를 판정 할 수 있으므로 국내 보험업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어 감독기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아울러 자회사 및 손자회사 최소 지분 보유 강제⁵²⁾는 권고사항 정도로만 하고 이는 연결납세제도⁵³⁾ 등을 통해 기업 스스로 자회사 지분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우선 과도기적으로 지분을 요건을 하향조정하고, 합작법인 등에 대한 예외 적용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금융과 산업의 분리원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배력 지분만을 금융지주회사의 요건으로 정의할 경우 현재 금융기관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 일시에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어 산업

5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상장회사 30%, 비상장 50% 보유, 손자회사인 경우는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는 50%,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는 30% 이상 보유

53)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로 이루어진 기업그룹을 하나의 법인(과세대상)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산출하는 제도로 OECD 회원국 중 21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원래 2006년부터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한 모회사를 중심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되 시행 과정에서 자회사 지분 비율을 낮춰갈 방침이었다. 그러나 공청회 등을 통해 대체세원 확보, 복잡한 세법개정문제 등 부작용이 지적되면서 연기된 상태이다.

계 자회사 지분을 일시에 처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 가능성 있다는 점을 염두 해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가제도 및 금융지주회사 정의 변경시 충분한 유예기간 및 기존 조직의 유지 원칙 등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관련 규정]

-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 금융업의 범위 등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2) 규제정책 측면

보험회사들이 기존의 지배구조에 급격한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사업 운영 모형으로서 보험지주회사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제2금융권 회사들의 금융지주회사 도입이 엄격한 규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 규제의 완화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나 보험을 포함한 제2금융권 기관들이 금산분리적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형성한 소유지배구조를 보험지주회사 체제로 이행하기 위해 이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적어도 단기간내 완전한 개편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지주회사(비금융주력자)가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규제는 당사자간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는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방지와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방지, 은행이 갖는 결제기관으로서의 사회 기반시설로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원칙을 유지하되, 보험지주회사의 일반적인 주식소유 제한 등에 있어서는 선진국의 제도를 원용하여 적용 제외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지주회사(비금융주력자)의 경우 금산

분리에 의거 엄격한 규제 적용으로 산업자회사도 소유할 수 없고, 은행의 특수성으로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입장에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보험산업 측면에서 볼 때 지나치게 불리한 법적용이라 보여진다.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지주회사는 순수금융자본이 아니란 입장에서 은행소유를 제한하고 동일한 대상(보험지주회사)을 또 다시 지주회사 관련 행위규제에서는 금융자본(금융지주회사)의 성격으로만 인정하여 산업자본과의 결합시 엄격히 제한하는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은행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와는 규제의 차이를 두는 방향으로 보험지주회사의 규제원칙이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상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금산분리 관련한 설립요건, 자회사 관련 규제 등 행위제한 등에 있어서 은행지주회사제도보다 규제 수준을 하향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관련 규정]

- 자회사의 업종,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의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4조)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타 회사 지배 금지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 동일 기업집단 회사 및 비금융기관의 주식보유 금지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 자회사간 상호 주식보유 금지(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공정거래법 제8조의2)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에 대해 비은행금융(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폭넓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
- 손자회사의 범위(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5조)

3) 진입 및 소유제한 측면

첫째, 금융지주회사 기준으로 '주식가치 50% 기준'을 유지할 경우, 비자발적 요인(주가변동 등)에 의해 지주회사 요건 해당 시 자발적인 해소 기회를 부여하거나, 고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경우 충분한 시간 내 해소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으로 명문화 하여야 할 것이다. 평가액의 변동 등 엄격한 사전인가제도에 의할 경우 법 위반 의사가 없음에도 법을 위반하는 회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제 및 처리 절차가 필요하다. 인가받지 않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해소절차가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제도가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둘째, 외국 금융기관에 대하여 국내에 금융(보험)지주회사의 설립·지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 방지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외국계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가능케 하는 예외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해외법인이 금융기관 및 금융지주회사로서 해당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및 감독을 받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즉 국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외국법인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미리 결정하여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한다.⁵⁴⁾

셋째,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들이 지주회사로의 진입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요인인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엄격한 주식소유제한은 보험지주회사로 진입 여부 고려 시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없고 오히려 현행 지배구조가 불안정하게 됨으로써 설립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5% 주식소유 한도', '자회사의 타 회사 지배 금지', '자회사간 상호주식보유 금지' 등의 규제는 보험지주회사 활

54) 이에 대해 본 보고서 자문시 국내금융기관의 금융지주회사 지배가 금지된 상황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이며, 더욱이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은 제외국간에도 차별적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성화를 위해 은행지주회사와는 달리 현행 수준보다 진일보한 규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금융지주회사가 일반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는 존치하되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적어도 현행 수준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금융(보험)지주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금융(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지주회사에 대하여 비금융자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공정거래법상의 금융 및 비금융 지주회사 양 체계를 흔들 수 있고, 대규모기업집단의 보험회사를 매개로 한 경제력 집중의 유지, 심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넷째, 금융지주회사법과 각 업법(보험업법, 은행법)간의 규제의 차이는 가능한 동일 규제대상에 대하여는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가하므로 회사형태의 전환·신설로 인한 득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개별 업법에서 금융기관의 타 회사 출자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금융기관(자회사)에 대하여 타 회사 지배를 추가로 금지하고 있어 동일 대상에 대하여 상이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규제의 배경에는 은행 및 보험업법상 출자지분 제한이 은행 및 보험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처 편중방지목적의 규제임에 반해, 금융지주회사의 타 회사 지배금지 규제는 금산분리원칙의 구현을 위한 것으로 양 규제는 각각 상이한 입법 목적을 가진다는 면에서 이중규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 보험지주회사의 도입 타당성과 은행과는 달리 대기업 소속 보험회사의 금산분리 규제 적용 배제에 관한 논의⁵⁵⁾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법상 이들 규제의

55)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산분리의 원칙과 관련하여 ‘산업자본이 금융자본화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감시감독·규제 장치

차이에 관한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보험지주회사는 다양한 회사들을 지주회사 산하 자회사로 만들 수 있고 손자회사로 들 수 없어 회사 운영 및 조직구조의 유연성이 떨어진다. 반면 은행지주회사는 다양한 회사(투자자문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용카드회사, 신탁회사, 신용정보회사 등) 등을 손자회사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 산하 보험회사(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회사(손자회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 위탁회사, 보험업법 제9조제1항 제2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부수업무), 신용정보회사, 신용카드업자, 투자자문회사, 신탁회사, 선물업자, 자산운용회사 등을 손자회사로 들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 한도(100%) 내에서만 자회사에 대한 출자가 가능하나 사업영역 다변화 등을 위한 보험지주회사의 출자여력 확대를 위해 출자한도에 대한 법정비율을 건전성 유지를 고려하면서 산업별 지주회사 특성에 부합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보험지주회사의 대형화를 위해서는 자기자본의 일정수준(예를 들면 130%)까지 출자한도의 확대를 허용하거나 출자한도 규제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에게 자기자본의 한도내에서만 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가능하게 한 것은 타인자본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지주회사 제도의 본질에 따른 최소한의 규제라 할 수 있으므로 보험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완화하기에 곤란할 것이다.

또한 대주주 등의 신용공여한도, 금융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내 타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는 현행 운영되고 있는 형태를 급격

가 마련돼 있으며 해외에서 오히려 금산·분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근 한나라당은 현재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 지분 소유한도를 단계적으로 10%까지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제2금융권에 대해 금융자본 소유지분 제한을 폐지하는 등 금산법 완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서울경제 2006. 7.10

하게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현행 보험업법을 준용하는 수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규정]

- 미인가 금융지주회사 처리방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신설)
-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7조)
- 손자회사의 범위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5조)
- 손자회사 규정(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 제한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 신용공여한도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
- 금융지주회사의 출자한도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제46조)
- 자회사 등의 행위제한(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4) 조직운영 측면

금융지주회사법상 국내 보험지주회사의 조직형태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를 모두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 조직구조는 운영상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하여 특별한 규제 없이 회사가 선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내 조직구조의 유연화가 필수적이므로 현재 2단계 수직계열화(손자회사)만 허용하는 것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일본 등의 지주회사 조직구조는 비교적 규제 없이 유연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국내와 비교된다.

아울러 현재 국내 금융지주회사에는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지주회사제도의 유인책으로서 연결납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연결납세제도는 국내에서 2004년부터 도입을 검토하여 2006년부터 시행

하고자 하였으나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부작용이 지적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동 제도의 도입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주회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 등은 모두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 기준으로 일본은 100% 자회사, 미국은 80% 지분율을 가진 자회사, 영국은 75% 이상 자회사에 대해 동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2. 설립 및 운영 모델

가. 설립 형태별 모델

우리나라의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보험회사)에서 시도될 수 있는 가능한 지주회사 형태별 설립모델로는 대기업집단 본사형, 금융소그룹형, 특정기업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⁵⁶⁾

또한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가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포괄적 주식교환 및 포괄적 주식이전, 공개매수를 대안으로 검토가 가능하다. 분할방식도 허용되어 있으나 분할 후 채무변제 연대책임, 건전성 훼손 등 문제로 금융기관의 지주회사 설립에는 부적당하다.

[제1안] 대기업집단 본사형

이 방식은 대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계열회사 전체(금융 및 비금융)를 대상으로 그룹 총괄본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현제도하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제한 규제 등 금산분리원칙의 엄격적용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지만 보험지주회사에 대해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설립 유인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전체 계열기업을 지주회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주간의 이해 조정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어 실현가능성이 매

56) 이재형(2000), pp.179-193 참조

우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2안] 금융소그룹형

이 방식은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중 금융 부문만을 묶어 소그룹화하고 소그룹의 계열회사 주식을 통해 금융부문 총괄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한다. 그리고 비금융부문은 기존 체제대로 두거나 별도의 일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금융부문과 산업부문의 자회사를 모두 거느리는 지주회사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실적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계열 부문을 거느리는 '대기업집단 본사형' 지주회사 설립이 계열회사간,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 이해 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이해의 일치가 가능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 방식에서는 대기업집단이 소그룹으로 보험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를 함께 설립하는 경우 두 개의 지주회사를 대주주가 직접 지배하거나 양 부문을 총괄하는 지주회사를 추가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양대 지주회사(보험지주/일반지주)를 동일 대주주에 의해 직접 지배하는 방식은 현행법상 규제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조직 역시 현행의 금산분리원칙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둘째, 완전한 양대 지주회사를 각각 설립한 후 다시 주식교환 등을 통해 총괄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현행 법규상 이런 상황은 설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양대 지주회사를 설립시에는 금융부분과 비금융부분간 순환출자 구조의 해소가 요구되고, 이 경우 총괄지주회사가 금융기관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금융지주회사로 간주된다면 비금융사의 자회사 편입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제3안] 특정기업형

이 방식은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가운데 특정의 1개 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기업구조조정수단으로서 회사를 분리하는 경우, 특정기업을 지주회사화하고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분할 분리하여 기업분리의 이점을 향유하면서 기업 전체의 종합적 경영도 가능하게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설립시 장애요인도 적고 설립유인도 있으나, 기업분리를 통한 구조조정은 지주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지주회사가 기업분리 및 분리된 기업의 종합경영을 가능케 하는 핵심적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 설립가능성은 낮다.

또한 보험지주회사의 지분 소유 방법에 따라 전체지분 집중방식, 내부지분 집중방식, 가족지분 집중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1방식] 전체지분 집중방식

이 방식은 지주회사가 그 형태에 따라 기존의 모든 계열회사, 소그룹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의 지분을 100%(혹은 절대다수) 소유하고, 기존의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의 주주는 모두 지주회사의 주주가 되는 방법이다. 지배구조는 현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사실상 대기업집단의 모든 계열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병하는 것과 유사하다. 예를 들면 각각의 계열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자회사에 자산 전부를 현물 출자한 후 스스로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이들 지주회사가 모두 합병하여 대형지주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단점으로는 자회사가 상장회사일 경우 주식의 100% 소유하는 것이 쉽지 않고, 비상장회사일 경우도 소수과 대주주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각각의 계열회사의 수많은 주주의 이해를 조정하는 문제가 주요 장애요인이 된다. 그러나 지주회사 설립에 따른 비용이 적게 소요되며, 특히 금융소그룹의 경우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에 이해가 일치하여 이러한 형태의 지주회사를 설립할 유인을 갖게 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 설립 가능성 있다.

[제2방식] 내부지분 집중방식

이 방식은 해당기업의 지배주주(동일인), 특수관계인, 계열기업 지분 등 내부 지분만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지주회사에 출자하는 주주들이 지배주주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전체지분 집중형에 비해 주주간의 이해 조정이라는 복잡한 문제는 비교적 배제할 수 있다.⁵⁷⁾ 보험회사의 회계처리나 이익배분 등과 관련한 불투명성으로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가치 평가가 곤란하므로 각 계열기업 보유주식의 가치평가에 대해 소수주주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강도는 전체지분 집중형에 비해 현저히 약화된다. 지주회사는 주식이전 또는 교환방식에 의해 개인주주 및 계열회사 소유지분의 출자 또는 매입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해당 계열기업에 대해 내부지분 비율이 현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의 의무보유 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50%)을 하회할 경우 지주회사 요건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⁵⁸⁾

[제3방식] 가족지분 집중형

이 방식은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만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가족지분 집중형은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의 평균지분이 5% 내외이므로 법적으로 지주회사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지분에 비례하는 기업지배권'이라는 국민정서가 확산됨에 따라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증대될 수 있어 설립 유인 및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상의 검토를 중심으로 국내 보험지주회사 설립시 설립 유인 및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금융소그룹형'중에서 '전체지분 집중형' 또는 '내부지

57) 보험회사의 회계처리나 출자하는 각 계열기업 보유주식의 가치평가에 대해 소수주주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강도는 전체지분 집중형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었다.

58) 2004년 4월 1일 기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를 보면 동일인(1.5%), 친인척(1.9%), 계열회사(40.0%), 기타(2.8%)를 합하여 총 46.2%이다. 공정거래위원회(2005.3)

분 집중형”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이 방식은 국내법상 지주회사를 산업별(일반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로 허용하고 있는 규제 방식에도 상충되지 않는다. 다만 금융 및 일반지주회사 자회사간 상호출자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인정 또는 해소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의 이해조정 문제만 해결된다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고 설립 유인도 비교적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국내 지주회사 설립모델을 정리하면 <표Ⅶ-2>와 같다.

<표Ⅶ-2> 지주회사 설립모델

유형	지분소유방식	검토
대기업집단 본사형	전체지분 집중형	이상적 지배구조지만 다수 주주간 이해조정 거의 불가능
	내부지분 집중형	주주간 이해조정이 가능하나 자회사 의무보유비율 확보 위해 대규모 자금동원 필요
	가족지분 집중형	주주 이해조정이 거의 필요하지 않으나, 지배주주의 지분미달, 사회적 비판여론 큼
금융 소그룹형	전체지분 집중형	이상적 지배구조이나 소수 주주간 이해조정 곤란
	내부지분 집중형	소수주주간 이해조정이 용이하나 지주회사를 하기 위한 유인효과 낮음
	가족지분 집중형	주주 이해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나 지주회사를 하기 위한 유인효과 거의 없음
특정 기업형	전체지분 집중형	구조조정시 활용할 수 있으나 기업분리효과가 지주회사제도에 국한된 것은 아님
	내부지분 집중형	주주 이해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나 지주회사 설립유인도 거의 없음
	가족지분 집중형	주주 이해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나 지주회사 설립유인도 거의 없음

주: 설립유인이 없다는 의미는 지주회사로 인한 소유 및 경영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

자료 : 이재형(2000), p.180의 모델을 참조하여 재작성함.

나. 설립방식별 유형

지주회사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업이 결합한다는 측면에서 합병과 유사하나 자회사의 법적 독립성이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합병과 차이가 있다. 보험회사가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업무다각화 등 특색 있는 경영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능, 업종, 지역, 전략 등의 특성별로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조직을 재편성 할 수 있다. 다음은 보험회사가 지주회사를 설립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설립방식을 사업부분할방식, 분사·합병방식, 합병대체방식, 해외사업형방식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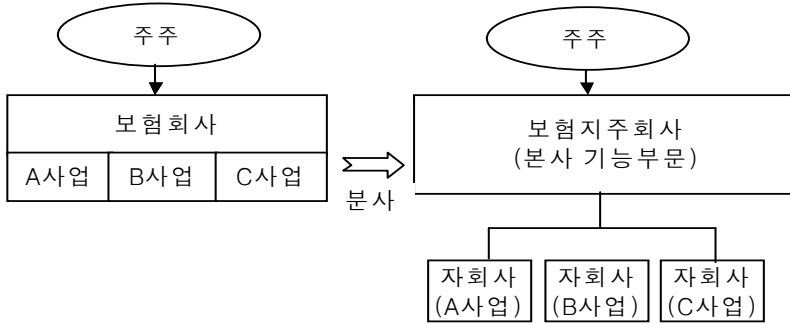
1) 사업부분할방식

사업부분할형 지주회사는 특정한 사업부문을 분리·독립시켜 자회사로 분사화 하는 방식으로 기존 보험회사의 기능별 사업부문을 독립시켜 자회사화 하는 방식이다. 사업부분할방식은 기존의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사업부문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기업부문, 개인부문, 연금부문, 자산운용부문, 직접판매채널 등으로 나누어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다. 지주회사는 개인부문 등의 우량 자회사의 지분매각 대금을 기업금융부문 자회사의 자본 확충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고, 기존 모회사의 경영전략 지원 조직이 지주회사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⁵⁹⁾.

사업부분할에는 현물출자에 의해 선출자·후설립 방식과 후출자·선설립 방식으로 자회사 설립이 가능한데 이때 지주회사는 독자적인 영업활동은 전혀 하지 않으며, 지주회사와 소속 자회사 전체의 기획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반면 자회사는 독립적으로 다각화된 사업을 수행하며, 이러한 형태의 지주회사는 타 회사의 지배보다는 다각화되고 분사화된 자회사의 사업부문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 보통이다.

59) 최도성(2001), p.58

<그림 VII-1> 사업부 분할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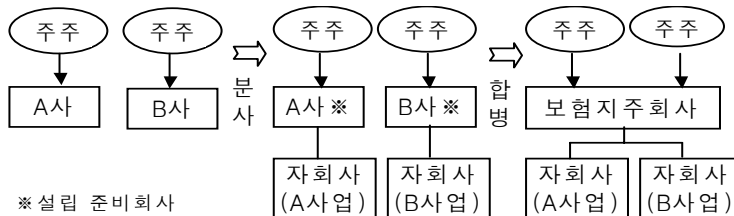


자료 : 相澤幸悅, 『金融持株会社で業界はこう変わる』, 日本実業出版社, 1997

2) 분사 및 합병방식

분사·합병형 지주회사는 자회사를 먼저 설립한 후 모회사를 통합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분사·합병방식은 보험지주회사의 설립 주체인 A와 B사가 각각의 사업부문을 분사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단계적 절차와 합의 과정을 거쳐 지주회사가 설립되는 방식이다. 이때 각각의 자회사들은 지속적인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며, 자회사 설립 후 남게 되는 모회사는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준비회사로서의 기능만 수행하게 된다(<그림VII-2> 참조). 일본의 T&D홀딩스의 경우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한 후 보험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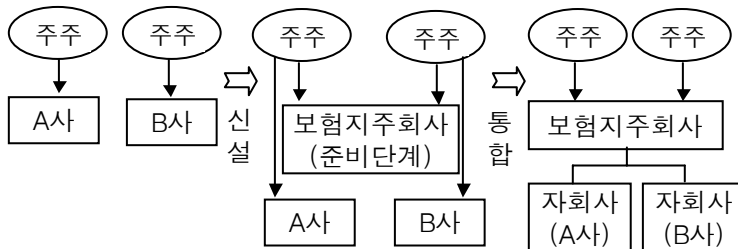
<그림 VII-2> 분사합병방식



3) 합병·대체방식

합병·대체형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설립에 의해 합병과 유사한 기업 결합 효과를 실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독립적인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전략적 제휴 등의 경험을 통해 결합하게 되는 공동 지주회사 설립 방식이다. 이 방식은 기업간 거래 또는 제휴를 통해 상호 기업의 장단점과 특성을 충분히 분석하는 등 이해도와 신뢰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합병·대체형 초기단계의 지주회사는 합병에 따르는 조직문화의 충돌이나 조직융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합되는 회사의 자율성을 충분히 수용하면서도 전략적으로 합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병준비단계의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한다⁶⁰⁾.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조직융합을 위한 기간이 지나면 하나의 회사로 통합되거나 통합이 되지 않더라도 영업수행 이외의 모든 분야는 통합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방식은 지주회사를 먼저 설립하는 방식으로 초기의 지주회사는 설립준비의 기능만 수행하고, 설립주체인 A, B사는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주회사 설립과정에서 참여회사 중 일부가 지주회사 편입에 거부하거나 탈락하는 사례가 있어 설립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의 미래아홀딩스의 경우 2001년 지주회사를 설립 후 자회사의 편입 및 합병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림 VII-3> 합병대체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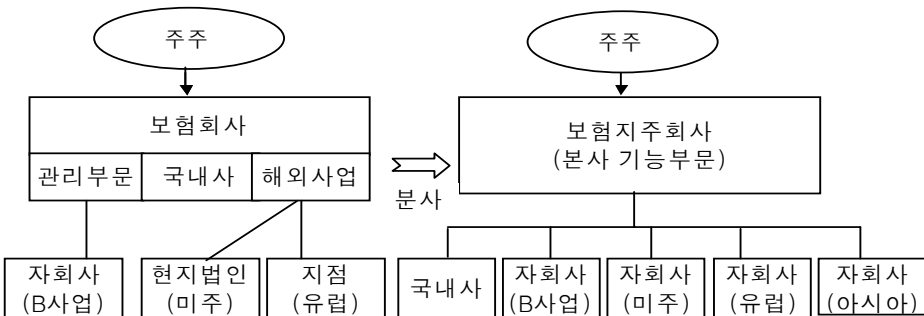


60) 최도성(2001), p.58

4) 해외사업형 방식

해외사업형 지주회사는 기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부문을 지주회사 산하의 해외 자회사로 전환하거나 신규 설립하는 설립방식이다. 해외사업 부문 총괄회사형 지주회사는 그 자신이 사업회사 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해외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자회사를 총괄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해외사업부문의 사업활동이 큰 글로벌기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문화, 영업환경의 이질성을 감안하여 지역별 책임자율경영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영국, 중국 등 8 개 국가에 현지 사무소(31개), 현지법인(15개), 지점(7개)의 형태로 진출하고 있으나, 본사의 해외영업 기능을 수행하므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시장이 큰 특정지역 사업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⁶¹⁾. AIG, AXA, Allianz 등 글로벌 보험회사들의 경우 보험지주회사 산하의 자회사 설립을 통해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해외사업형 지주회사는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지주회사 설립 모델로서 해외 주요거점에 설립된 현지법인을 지주회사 산하의 미주, 유럽, 아시아 지역 별로 총괄 자회사로 전환하고, 해외 자회사를 거점으로 사무소 등을 총괄하게 된다.

<그림 VII-4> 해외사업형 지주회사 방식



자료: 相澤幸悅(1997)

61) 금감원 보도자료, 「금융기관 해외점포 진출 현황」 2004. 12

다. 해외운영모델

선진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금융(보험)지주회사를 해외진출 전략 및 중점 취급 산업에 따라 구분하면, 세계시장으로의 적극적 진출을 시도하는 글로벌 금융그룹형과 국내시장을 주 타겟으로 활동하는 국내 금융그룹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글로벌 지주회사(global holding company) 모델은 다시 글로벌-전문형(은행+자산관리 또는 보험+자산관리), 글로벌-종금형(은행+보험+자산운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점차 전문형에서 종합금융형으로 이전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형 지주회사(domestic holding company)도 글로벌형과 마찬가지로 국내-전문형, 국내-종금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소형사는 보험전문형으로 대형사는 종합금융형으로 이원화가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보험지주회사를 운영하는 금융그룹들은 국내시장 규모 및 주 수익원의 해외보험시장 점유 비중에 따라 협소한 국내 시장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외보험시장에 역점을 두는 형태, 국내에 수익기반을 구축하면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해외에 진출한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글로벌 보험그룹들의 지주회사 설립배경은 첫째, 복합형 금융상품, 연금, 모기지 등의 신시장 진출을 위해 기존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서 보험회사가 은행업 및 자산관리업 등에 진출하는 것이다. 이들 기업들은 기존에 보험업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해 가던 상태에서 점차 종합금융화하여 경영자원의 유기적인 활용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시장개척과 수익성 창출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둘째, 국내 보험시장이 성숙단계로 들어감에 따라 고도 경제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등 개발국가를 중심으로 보험시장에 진출하여 미래의 안정적인 수익성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초기에는 해외 부실 보험회사 등의 인수합병을 통하여 해외시장에 진출하였으나 이후 포화상태에 이른 보험시장보다는 개인금융자산

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글로벌 종합금융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국내형 보험지주회사는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영업중인 보험회사의 독자적 경영전략에 따라 편의상 보험그룹(대형사) 모델, 중소형사 모델, 해외지역 현지화 모델 등 3개의 비즈니스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형 보험지주회사의 배경은 자본 및 업무의 우호적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등의 M&A를 통하여 그룹화 및 대형화하여 국내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계열회사간 경영자원의 집중과 재분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에서 추진된다. 특히, 일본의 경우 과거 은행계열의 친밀회사로 있던 우호적 관계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 회사간의 그룹화 및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다.

보험그룹(대형사) 모델의 경우 계열관계 또는 우호관계에 있는 국내 생명 및 손보사들이 대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주회사 조직을 활용하는 형태이다. Millea Holdings는 일본 최대의 손해보험회사(1위)와 중견 손해보험회사(6위)가 합병하여 세계 12위권의 손해보험회사를 탄생시킨 지주회사방식을 통한 대형화의 대표적 사례이다.

중소형사 모델의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형사간에 대형화를 통한 경영자원 집중과 재분배를 위해 활용된다. 일본 T&D Holdings는 중견 생명보험회사인 다이도생명과 타이요생명이 보험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대형화를 추진한 대표적 사례이다.

해외지역 현지화 모델은 해외에 진출한 자국기업을 주요 고객기반으로 하여 현지국의 제도적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형태이다. AXA Holdings Japan은 AXA그룹(프랑스)의 해외시장 교두보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일본에 진출한 외국계 회사가 현지 국가에 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한 대표적 사례로서 해외지역별 지주회사 설립을 통하여 적극적인 세계보험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MSI Group Holdings(USA)는 일본 손해보험 대형사인 미즈이스미토히상이 미국의 보험시장의 영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 현지에 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한 사례이다.

그밖에 은행소유 및 산업자회사 유무에 따른 순수 금융자본형 모델과 산업자본형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보험지주회사의 은행 소유 또는 은행의 보험소유는 순수 금융자본인 경우 겸업화, 대형화 추세에 따라 어슈어뱅크(Assurbanking) 또는 방카슈랑스(Bankassurance)가 선진국의 금융산업에서 확산되는 추세이다.

산업자본형 모델은 과거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을 주 수익기반으로 전환하거나, 금융자본으로 시작하여 산업자본으로 확장하는 형태로 구분된다. 전자에는 GE Capital Services(GECS, 미국), Sony Financial Holdings(일본), 후자에는 Berkshire Hathaway(미국)가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자본인 동원그룹에서 금융부문이 계열 분리하여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한국투자금융지주회사가 있다.

<표 VII-3> 선진국의 보험지주회사 모델

지주회사 형식		회사명
글로벌형 (보험전문형→종합금융형)		AIG, AXA, Allianz, Aegon NV, ING, Prudential
국내형	보험그룹형(대형화)	Millea Holdings
	중소형사형	T&D Holdings
	해외 현지화형	AXA Holdings, MSI Group Holdings(USA)
은행소유 유무	은행 소유형	ING Group N.V. Allianz Berkshire Hathaway Sony Financial Holdings
	은행 미소유	Millea Holdings T&D Holdings
산업 자본형	산업 ⇒ 금융	Sony Financial Holdings GE Capital Services
	금융 ⇒ 산업	Berkshire Hathaway

3. 향후 전망

국내 보험산업의 경우 크게 금융자본형과 산업자본형으로 구분되어 자본의 원천에 따라 지주회사제도의 활용 가능성이 상이하지만, 양자 모두 금융시장에서의 은행의 지배적 입지 확대 및 외국자본에 의한 시장 점유 증대에 대응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를 안고 있다.

금융자본형 보험회사는 국내자본으로는 교보생명,⁶²⁾ 미래에셋생명, 하나생명, KB생명 등이며, 외국자본으로는 알리안츠생명, ING생명, 푸르덴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AIG생명 등이다. 산업자본형 보험회사로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대한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금호생명, 녹십자생명 등이며,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삼성화재, 동부화재, 신동아화재,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 등이다. 이들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1나 이상의 보험관련 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자회사 보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자산운용회사, 신용카드사, 보험금지급심사회사, 자동차손해사정회사, 채널별 판매자회사, 방카슈랑스 자회사, 요양시설 관련회사, 해외거점 자회사 등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국내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시 업무 다각화 용이, 금융 계열사간 정보공유 허용, 대형화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향후 연결납세제도 활용(현재 미도입) 및 자회사간 시너지 창출 가능성 등이 예상된다. 이에 은행권은 이미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지주회사의 이점을 십분 활용하면서 보험시장내 지배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보험시장에서의 생존 및 성장을 위해서는 지주회사제도에 대한 보험산업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우선 금융전업그룹 소속 보험회사의 경우 산업자본인 대기업집단 소

62) 교보문고를 소유하고 있어 산업자본형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그 비중이 적어 여기서는 금융자본으로 분류한다.

속 보험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 제도 하에서도 규제에 대한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보험지주회사의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확대와 대기업집단의 보험지주회사 설립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그룹의 규모가 작은 금융전업그룹 소속 보험회사에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보험지주회사 활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외국계 보험회사의 경우 외국계 금융지주회사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지주회사 설립에 큰 어려움 없을 것이나 아직은 설립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기업집단 소속 보험회사들은 다수의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을 순환출자의 형태로 계열내에 편입되어 지배하고 있어 현행 규제 및 금융정책 하에서는 보험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들 보험회사는 그룹전체의 안정지배력을 유지하면서도 직간접적인 설립비용을 감당할 수 있고, 설립으로 인해 기대되는 혜택이 이러한 비용을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보험지주회사의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지주회사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이들 기업집단들이 보험지주회사를 설립 또는 전환할 수 있도록 현행 국내 금융지주회사제도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요구된다. 제도적인 재설계는 법제가 글로벌스탠더드에 부응하여야 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 전환의 필요성과 선진화된 지배구조 체제 확보가 보조를 맞추어 가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제도를 둘러싼 논의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은 첫째, 산업경쟁력 제고 측면, 둘째, 경제력 집중문제를 포함한 경쟁정책적 측면, 셋째, 회사법적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⁶³⁾

기업 및 산업경쟁력 제고측면에서는 지주회사를 이용한 기업분리를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쟁 정책적 측면에서는 지주회사가 가진 기업통합효과⁶⁴⁾

63) 이재형(2000), pp.68-97 참조

64) 지배자본의 절약효과에 따라 금융그룹의 형성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를 말한다.

에 의해 개별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형성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경제 전체를 소수의 기업이 지배하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회사법적 측면에서는 일반 회사들의 경제활동과는 달리 사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대신에 주식보유에 의해 사업회사를 지배하므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강조한다.

최근 국내외 금융권내에서 진행되는 금융개혁 촉진 측면에서 보면 지주회사에 대한 논의가 산업경쟁력 및 기업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비중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력집중 문제를 포함한 경쟁 정책적 측면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감시감독·규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 지주회사는 지배자본의 절약효과를 가지며, 따라서 일정한 자본을 가진 지배주주는 지주회사를 이용하여 지배기업을 확대하므로써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측면이 상존한다.⁶⁵⁾ 이에 대해 지주회사를 이용 소액자본에 의한 대자본의 지배나 가공자본 증식효과는 자본시장 및 금융시장 등에 의한 견제를 받으며, 또한 계열사간 출자행위 등과 같은 다른 유력한 수단이 있어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을 강화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⁶⁶⁾ 이에 따라 향후 보험지주회사제도는 경쟁 정책적 측면보다는 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국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자본시장통합법 입법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외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국내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주제는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금융기관에 대한 선택기회의 제공 확대라는 점에서 보험지주회사 제도에 대한 설립 유인의 제공 및 활성화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65) 奥村宏(1995)은 지주회사는 그 기능이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의 지배 그 자체이며, 이로 인하여 경제력 집중의 유력한 수단으로 된다고 주장한다.

66) 이재형(2000), p.94.